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유호렬 의원)

의안 번호	16-121
----------	--------

발의년월일 : 2016. 11. 23.

발 의 자 : 유호렬 · 강희향 · 김효식
김윤정 · 백남환 · 신종갑
이동주 · 이봉수 · 이학래
허정행 (10명)

1. 제안이유

마포구 홍대 거리 주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마포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물론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 다.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안 제5조)
- 라. 준수사항 및 업무의 위탁(안 제6조 ~ 제7조)
- 마.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11. 25.~11.30.(의견제출 없음)

다.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길거리 등에서 예술행위를 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이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리예술가 준수사항)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마포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신규제정 2014. 01. 2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